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0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정혜경 · 이개호 · 임미애
정춘생 · 한창민 · 용혜인
김영배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억원으로 축소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복원함(안 제18조의2제6항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각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업”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 것.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

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일 것
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을 것

②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7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억원

제72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제18조의2제6항제4호”로 한다.

2. 상속인이 제18조의2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업”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 것.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신 설>

운영하는 기업일 것

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을 것

②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직접 사용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70억원

② ~ ④ (생략)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억원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10년-----

-----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10년간-----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
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
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
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
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생략)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
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나. -----10년간-----

-----100분의 100-----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6항-----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

⑨ -----

-----10년-----

-----.

1. 2. (현행과 같음)

⑩ -----제6항-----제9항
제2호-----
-----제6항

제9항제2호-----

제6항-----제9항 제2호-----

⑪ 제6항-----제9항 제2호-----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
세의 납부유예) ① -----

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 3. (생략)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

-----.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인이 제18조의2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의2제6항제4호-----

된 세액의 전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